교직원 보수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대학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2. 28)

제 3조 (보수자료조사)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정도에 따라 직책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본봉과 연구보조비 또는 직무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그 밖의 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보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봉 급

제 5조 (직급 및 호봉)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각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조 (급외) 총장은 제5조에 정한 직급별 호봉 외에 필요에 따라 급외호봉을 정할 수 있다.

제 7조 (봉급) 제5조 및 제6조가 정하는 각 직급 및 호봉의 보수는 매 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 8조 (조교의 봉급) 조교의 보수는 매 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 9조 (연구보조비) ①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보조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보조비) ①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직무보조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초임급 및 승급) 교직원의 초임급 및 승급은 각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복직자의 초임급) 퇴직 또는 휴직한 교직원이 복직할 경우의 초임급은 퇴직 또는 휴직 당시의 직급, 호봉(조건부 또는 촉탁기간의 호봉은 제외)을 초임급으로 한다.

제 3 장 보수의 지급

제14조 (보수지급일)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 지급일로 한다.

제15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어떠한 임용의 경우에도 발령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다만,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면직(파면, 해임에 의하여 면직한 경우와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16조 (봉급의 감액) 복무규정이 정하는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 1일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7조 (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해직된 교직원이 잔무처리를 위한 업무를 계속할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휴직 및 해외여행자의 보수) ① 휴직기간중의 봉급지급에 관하여는 법인정관의 휴직중 처우 기준을 준용하며, 제수당에 대한 지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9. 1., 2024. 2. 16.)

② 교직원의 연구년 및 해외연수 기타 여행에 따른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9. 1., 2021. 3. 9.)

제18조의2 (징계기간중의 보수) 교원인사규정과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교직원에 대한 봉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하며, 제수당에 대한 지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9. 1)

1. 강등기간중의 봉급은 봉급의 전액 미지급
2. 정직기간중의 봉급은 봉급의 전액 미지급
3. 감봉기간중의 봉급은 봉급의 3분의 2 지급. 단, 직원의 봉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제18조의3 (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직위해제기간중의 교직원에 대한 봉급은 법인정관 제42조의 직위해제 중 처우 기준을 준용하며, 제수당에 대한 지급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2. 16.)

제19조 (겸직보수)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겸직의 보수가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 4 장 상여 및 정근수당

제20조 (상여수당) ①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월의 보수 지급일에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 12. 12.)

② 상여수당의 매회별 지급액은 당해연도 급여책정 시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해당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④ 학년말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 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21조 (정근수당) ①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 12. 12.)

②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 교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수당을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 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9. 1)

1. < 삭제 2018. 12. 12 >
2.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에게는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8. 12. 12.)
3. 감봉처분을 받은 교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8. 12. 12.)
4.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 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이 3월을 초과한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8. 12. 12.)

5. 휴직 교원 중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8. 12. 1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 교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12.)

제 5 장 제 수 당

제22조 (보직 및 직책수당) ①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때에는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직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23조 (초과근무수당) ① 총장은 교직원의 특수한 직무수행 또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초과근무수당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 < 삭제 2018. 12. 12 >

제25조 (출납수당) ① 금전출납자에 대하여는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납수당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26조 (성과수당) ① 교직원의 업적 및 성과평과에 따라 성과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수당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27조 (가족수당) ①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자녀인원 제한없음)로 한다. (개정 2018. 12. 12)

② 가족수당의 대상과 지급기준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8. 12. 12)

제28조 (급량비) ①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급량비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29조 (장기근속수당) ① 교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장기근속수당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3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본교 부속유치원, 고등학교,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2.)

②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8. 12. 12.)

제31조 (기타수당) ①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8., 2020. 4. 14., 2020.08.12., 2021. 3. 9., 2021. 9. 10., 2023. 4. 20., 2024. 3. 1.)

1. 교통보조비

가. 자가운전보조금: 직원의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나. 캠퍼스 교통보조비: 산학융합캠퍼스·서울캠퍼스 소속 교직원 중 지원 세칙에 따라 인정 되는 교직원에 한해 지급하는 수당

2. 직위수당: 직원의 직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3. 연가보상비: 연가 잔여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학생지도관리수당: 학생 생활, 취업 및 연구 등 학생지도 관리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가. 취업전담교원 지도수당

나. 공학교육혁신센터 PD수당

다. 기초과목 튜터링 지도수당
라. 채플수당
마. 기타 학생지도관리수당 등
5. 심사평가수당: 각종 시험의 출제, 감독, 평가 및 진행을 담당하거나 교내・외 사업의 연구, 회의, 자문, 집필 및 진행을 담당하는 교직원에 지급하는 수당
가. 입시수당
나. 논문지도・심사수당
다. 시험감독・출제수당
라. 국책사업·교책사업참여수당
마. 정책연구수당
바. 자문수당
사. 기타 심사평가수당 등
6. 제위원회 수당: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가. 대학평의원회수당
나. 등록금심의위원회수당
다. 기금운용심의회수당
라. 기타 제위원회수당 등
7. 특수업무수당: 일정 자격이나 면허소지자 또는 전문성, 특수성이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가. <삭제 2024.03.01.>
나. 간호수당
다. 기타 특수업무수당 등
8. 복지지원수당
가. 외국인교원 주택수당
나. 문화복지지원비
다. 명절(휴가)수당
라. 직원 기념일 지원비
마. 장기근속자 안식월 수당
9. 포상수당 : 총장 명의의 포상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가. 장기근속포상수당(10년, 20년, 30년 근속 교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나. 우수 교직원 포상수당
10. 행정보조수당 : 국책사업, 비등록금회계 재원 교내 사업, 특별과정 운영, 부속기관 운영을 담당 또는 지원하는 조교 및 계약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가. 학과단위 사업 행정보조수당
나. 단위사업 행정보조수당 등
② 1항이 정하는 수당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곤란성 또는 책임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2]

제 6 장 퇴 직 금

제32조 (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 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직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준한다.

제 7 장 강 사 료

제34조 (용어의 정의) ① 초과강의라 함은 전임교원이 책임시간 이외에 담당한 강의시간수를 말한다.

② 시간강의라 함은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한 강의시간수를 말한다.

③ 특별강의라 함은 국내외의 저명인사 또는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의뢰한 강의를 말한다.

④ 강의 1시간이라 함은 1교시를 말한다.

제35조 (강사료의 지급) ① 초과강의 강사료는 초과강의를 담당한 교원에게 실제 강의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시간강의 강사료는 시간강의를 담당한 강사에게 실제 강의 실시 시간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비상사태, 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휴업기간 중 초과강의 또는 시간강의를 담당할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6조 (강사료의 지급기준)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7조 (강사료) 강사료는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38조 (강사료의 계산) ① 강사료는 주 단위로 계산한다.

② 특별강의는 보통강사료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계산한다. 다만, 출강하기 위하여 숙식을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본 대학의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 숙식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기간 외국인으로 체재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바 전임교원의 호봉에 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강사료 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강의를 실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기간
2. 학교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한 휴업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 또는 시간강사에 한한다.

제40조 (강사료 지급일) 강사료는 특별강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2.)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결재에 의해 지급된 각종 수당은 이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1.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결재에 의해 지급된 각종 수당은 이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결재에 의해 지급된 수당은 이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08.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결재에 의해 지급된 각종 수당은 이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03.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인정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 개정사항과 제18조3 신설사항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17. 9. 1, 2024. 2. 16.)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표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위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중	감봉기간 중	휴직기간중			직위해제기간중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할이 지급되는 경우
지급할 금액	수당액의 전액 감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8할	수당액의 7할	수당액의 5할	수당액의 8할	수당액의 5할	수당액의 3할

※ 공상휴직의 경우는 위 수당에 대하여 전액 지급한다.
※ 단, 직원의 경우, 감봉기간중 감액금액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별표 2> 교직원의 안식년 및 해외연수 기타 여행에 따른 보수 지급 구분표(개정 2018. 9. 1., 2021. 3. 9.)

항목	구 분	기 간	신분 및 처우
1	교수연구년제	1년 이내	보수 전액
2	국비지원 해외파견	6개월 이상 1년 이내	1항과 동일
3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의한 해외파견	1년 이내	봉급
4	학위취득 목적의 유학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통산 3년)	본봉 50%
5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외국인 교육기관에 고용	고용기간	지급 안함
6	외국기관(대학, 연구소)에의 자비연구체류	1년 이내	본봉 50%
7	사적 해외여행	6개월 이내	지급 안함